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좌하수처리장 2단계 토목 및 건축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공사)**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턴~90일간

라. 공사위치: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내(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 211)

마.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참조**

1) 가좌하수처리장 2단계 토목·건축 시설물 보수공사 1식

가) 균열보수(주입): 1003.20m, 균열보수(충전): 50.64m, 균열보수(표면처리): 182.40m

나) 단면복구 : 121.92㎡, 단면처리: 322.45㎡, 단면처리(방청): 11.83㎡

다) 에폭시 페인트칠: 206.97㎡

바. 기초금액: **금166,287,000원(추정가격 금151,170,000원, 부가가치세 금15,117,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처

입찰서접수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8. 21.(금) 20:00 ~ 2026. 8. 27.(목) 10:00	2026. 8. 27.(목)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코드: 4992](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가좌사업소 설계담당 ☎ 032-899-0327)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가. 설계서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참여 업체가 요청시 개별 현장설명 가능)
-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46,403원	1,661,633원	2,195,482원	218,338원	1,063,075원	3,207,875원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 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착공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홍-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 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6.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불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1.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2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평가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 [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 [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__ . __ . __ .

업 체 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사업소 팀 급 (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인
-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환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	----	----	----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육 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12">일정</th> <th rowspan="2">인원 (명)</th> <th rowspan="2">교육방법 (내·외부)</th> </tr> <tr>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특별안전보건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집체(내부)</td> </tr> </tbody> </table>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graph TD
    A["사업주  
담당자  
(000-000-0000)"]
    B["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C["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000-0000)"]
    D["사고 최초발견자  
(000-000-0000)"]
    E["관계기관협조"]
    F["사고처리"]
    G["OO지구대  
(000) 000-0000"]
    H["OO소방서  
(000) 000-0000"]
    I["OO지방노동청  
(000) 000-0000"]

    A --- B
    A --- C
    A --- E
    B --- F
    C --- D
    E --- G
    E --- H
    E --- I
  
```

사업주
담당자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000-0000)

사고 최초발견자
(000-000-0000)

관계기관협조

- OO지구대
(000) 000-0000
- OO소방서
(000) 000-0000
- OO지방노동청
(000)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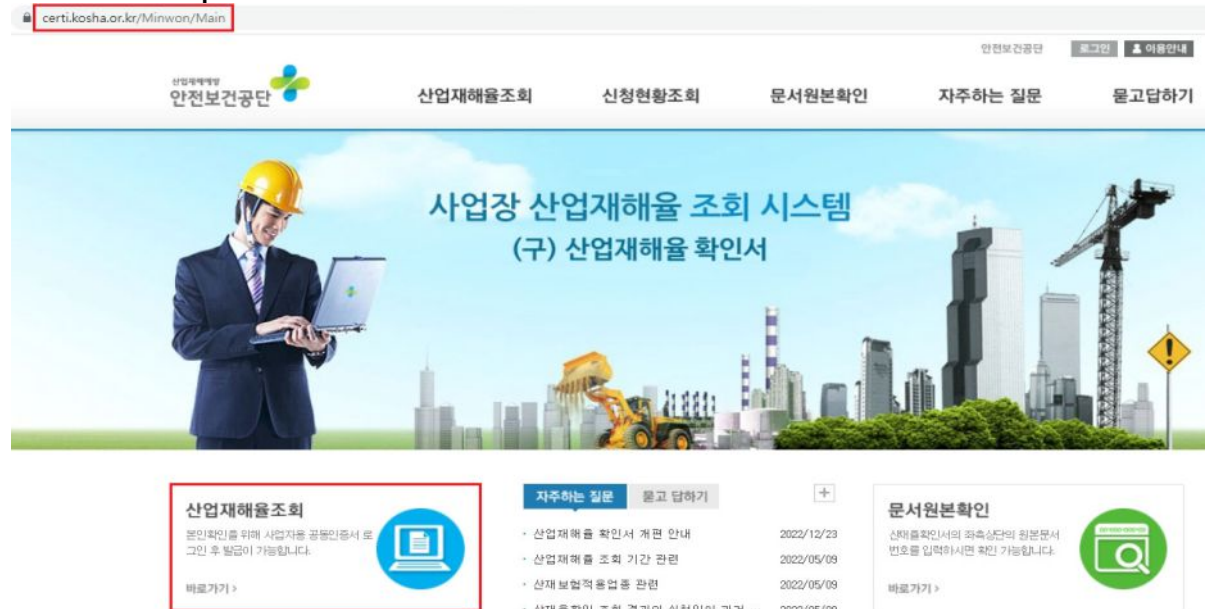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 현장보존 및 정리
- * 관계자외 접근금지

12. 산업재해 현황

certi.kosha.or.kr/Minwon/Main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원본문서번호:36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 결과

◆ 신청내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산재 적용업종 (종업종)	건설업 등 업종
소재지			

- 해당 자료는 기업 스스로 산재현황을 파악하여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장등록번호” 기준의 조회자료로 법인번호, 사업장관리번호로 조회한 결과와 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4년 재해율(사고사망안전율)은 잠정 수치입니다.

◆ 조회 결과

① 사고사망안전율

기간	사고사망안전율(%)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2021년01월~2023년12월(3년 평균)	0.00	1
2021년01월~2021년12월	0.00	1
2022년01월~2022년12월	0.00	1
2023년01월~2023년12월	0.00	1
2024년01월~2024년03월	0.00	1

- 산출방식: (사고사망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times$ 10,000
- 사고사망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문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 재육형사 · 폭력행위 ·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② 재해율

기간	재해율(%)					
	전체		사고		질병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2021년01월~2023년12월(3년 평균)	0.00	1.07	0.00	0.94	0.00	0.12
2021년01월~2021년12월	0.00	1.16	0.00	1.05	0.00	0.11
2022년01월~2022년12월	0.00	0.96	0.00	0.87	0.00	0.11
2023년01월~2023년12월	0.00	1.01	0.00	0.85	0.00	0.16
2024년01월~2024년03월	0.00	0.21	0.00	0.16	0.00	0.05

- 산출방식: (재해자 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times$ 100
- 재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 ※ 질병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재해자로, 해당 사업장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명: [전자서명]

심기 사실을 확인함
2024.06.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본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무단으로 복사, 위/변조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명서 발급 정보: Chrome | 버전: 3단 | 버전: 3단 | 버전: 16.0cm | 버전: 1.5cm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6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개인보호 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2(하)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중)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붙임6>-참고

위험성 추정기준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최대(사망) (4)	대(장해발생) (3)	중(병원치료) (2)	소(비치료) (1)
최상(매우높음) (5)	매우 높음 (20)	매우높음 (15)	높음 (10)	낮음 (5)
상(높음) (4)	매우 높음 (16)	높음 (12)	보통 (8)	낮음 (4)
중(보통) (3)	높음 (12)	보통 (9)	낮음 (6)	매우 낮음 (3)
하(낮음) (2)	보통 (8)	낮음 (6)	낮음 (4)	매우 낮음 (2)
최하(매우낮음) (1)	낮음 (4)	매우 낮음 (3)	매우 낮음 (2)	매우 낮음 (1)

위험성 수준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비고
1~3	매우 낮음	허용 가능	현재 상태 유지	
4~6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8~9	보통	허용 가능 또는 허용 불가능	계획적으로 개선	
10~12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가능성(빈도) 구분표]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 되어있으며 안전조치에 사항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법 위반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으며 안전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의 접근이 불가능하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자가 사용/작업할 경우 피해 가능성이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공학적 대책 등이 완벽히 마련되어 교육 미실시자도 피해 발생 가능 없음)

[중대성(강도) 구분표]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상	사망	4	■ 사망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법 위반
상	장해 발생	3	■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산재조사표 제출, 의사소견등 장애 판정)
중	병원 치료	2	■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산재조사표 제출)
하	비치료	1	■ 휴업이 수반되지 않은 재해

유해 · 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1.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